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2015.8.3



제 1 조 (목 적)

- ① 이 규정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③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3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할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소 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니하다.

제 5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6 조 (기능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 2. 이사활동 평가 및 활용 방안 검토
 3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7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8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9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10.1.26)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8.3)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